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4310

제안연월일 : 2024. 9.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372호)	이연희의원	2024.6.12.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8.26.) 상정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회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564호)	조승환의원	2024.7.10.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8.26.) 상정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회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601호)	서영교의원	2024.7.10.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8.26.) 상정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회부

- 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8.) 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9. 4.) 에서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 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법안

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적선원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선원 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 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다.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등).

법률 제 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07조"를 "제74조의2, 제107조"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장제비)"를 "(장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족"을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으로, "장제비(葬祭費)"를 "장례비(葬禮費)"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제비"를 각각 "장례비"로, "장제를 한 자"를 "장례를 지낸 자"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장제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108조의 제목 중 "직업안정업무"를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제15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제비"를 각각 "장례비"로 한다.

제170조제15호 중 "장제비"를 "장례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	
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u>제</u>	<u>제</u>
<u>107조</u> (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	74조의2, 제107조
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	
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	
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	
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장제비) ① 선박소유자는	제100조 <u>(장례비)</u> ①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	
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유족</u> 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
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u>장제</u>	
비(葬祭費)로 지급하여야 한다.	장례비(葬禮費)
② 제1항에 따른 <u>장제비</u> 를 지	② <u>장례비</u>
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	

에는 실제로 <u>장제를 한 자</u>에게 장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지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 (생략)

제108조(선원의 <u>직업안정업무</u>) ① 저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신설>

3.·4. (생략)

<u>장례를 지낸 자</u>
<u>장례비</u>
세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장례비
,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선원의 <u>인력확보 및 직</u>
<u>업안정업무</u>) ①
1 0 (코레기 기호)
1.·2. (현행과 같음)
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
우 개선에 관한 업무
3.·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152조의2(임금채권 등의 우선 변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 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 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 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 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4.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

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

② (현행과 같음) 제152조의2(임금채권 등의 우선 변제) ① -----1.·2. (현행과 같음) ----<u>장</u>례비 4. (현행과 같음)

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1.·2. (생략)
-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4. (생 략)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u>장제비</u>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16.·17.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장례비</u>
제170조(벌칙)
1. ~ 14. (현행과 같음)
15장례비
16·17 (혀해과 간으)